

의안번호	2214985
의 퇴 인	유영하의원
회 답 일	2026.5.13.
추계번호	25D674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 손자녀간 보상금 수급권 이전 허용, 독립유공자의 사망일 구분에 따른 보상금 수급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는데 따른 재정소요 증가와 보상금 지급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중단에 따른 재정소요 감소를 고려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총 3,174억 6,300만원(연평균 634억 9,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보상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A)	62,684	65,883	69,245	72,779	76,492	347,083	69,417
생활지원금 지급 중단에 따른 재정소요 감소(B)	5,924	5,924	5,924	5,924	5,924	29,620	5,924
최종 추가재정소요(A-B)	56,760	59,959	63,321	66,855	70,568	317,463	63,4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제1항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손자녀(제1항제3호 단서의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을 포함)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의 자녀대 1명도 승계 대상이 됨(제1항제3호의2)	의무규정
2	안 제12조제2항 (보상금)	안 제12조제2항 본문의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단서 및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 구분을 삭제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제1항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
2	안 제12조제2항 (보상금)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1명까지 포함하되,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봄
 -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손자녀 1명에게 지급하고,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손자녀 1명에게 지급함
-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를 최초로 등록한 손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의 자녀대 1명까지 확대하고 손자녀간 보상금 수급권 이전을 허용하며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 구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추가재정소요 발생
 - 개정안에 따라 신규 보상금 수혜인원은 2,625명이며, 조항별 수혜인원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추가 지급 대상 (2025.8월 기준)

(단위: 명)

구분	안 제5조제1항3호의2 신설		안 제12조2항2호 삭제	안 제12조2항 단서조항 삭제	합계
주요 내용	1945.8.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최초로 보상금을 받은 손자녀의 사망 시 형제 또는 자녀에게 이전	제1항제3호 단서의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의 사망 시 자녀	1945.8.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현재 보상금을 못받고 있는 손자녀에 대한 수급권 인정	1945.8.14일 이전에 사망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손자녀가 사망하여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	
인원	906	38	1,419	262	2,625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추가지급 대상인원은 2025년 8월 기준 2,625명이며, 이들이 사망 시 다른 손자녀나 그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계기간 중 보상금 추가지급 대상인원은 2,625명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보상금 월 지급액은 2026년 예산단가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정
- 보상금 추가지급 대상자 중 생활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미지급액을 추가재정소요 차감액으로 산정함
 - 생활지원금은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 지급되고 있음
 - 보상금 추가지급 대상자 2,625명 중 생활지원금 수급자는 1,296명(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50명,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946명)임
 - 생활지원금 단가는 2026년 예산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 개정안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 손자녀간 보상금 수급권 이전 허용, 독립유공자의 사망일 구분에 따른 보상금 수급권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지급대상) 개정안에 따라 사망 시 추가적으로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되는 대상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의 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 최초 등록 당시 자녀가 사망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손자녀 2,445명과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증손 120명 등 2,625명임

[표 3]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추가지급 대상의 훈격별 인원 및 생활지원금 지급인원
(단위: 명)

구 분	합 계	건국훈장			건국 포장	대통령 표창	생활지원금 기수급자	
		1~3등급	4등급	5등급			중위 50%이하	중위 70%이하
수혜 인원	2,625	206	469	1,068	194	688	350	946

주: 2025.8월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신규지급 대상인원은 2025년 8월 기준 2,625명이며, 이들이 사망 시 다른 손자녀나 그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계기간 중 보상금 신규지급 대상인원은 2,625명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지급단가) 2026년 지급단가에 2022~2026년 연평균 증감률 5.1%를 적용하여 산출

○ 최근 5년간 보상금 지급단가 추이는 아래와 같음

[표 4]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월 지급단가 추이

(단위: 천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독립 유공자 훈격	건국훈장1~3등급	2,489	2,626	2,757	2,895	3,040	5.1
	건국훈장4등급	2,074	2,188	2,297	2,412	2,533	5.1
	건국훈장5등급	1,684	1,777	1,866	1,959	2,057	5.1
	건국포장	1,202	1,268	1,331	1,398	1,468	5.1
	대통령표창	803	847	889	933	980	5.1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추계결과) 확대되는 보상금 수급 대상자 수에 보상금 월 지급단가를 적용하면, 향후 5년간 추가재정소요는 3,470억 8,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지급대상 (명, a)	건국훈장1~3등급	206	206	206	206	206	—
	건국훈장4등급	469	469	469	469	469	—
	건국훈장5등급	1,068	1,068	1,068	1,068	1,068	—
	건국포장	194	194	194	194	194	—
	대통령표창	688	688	688	688	688	—
	합계	2,625	2,625	2,625	2,625	2,625	—
월 지급단가 (천원, b)	건국훈장1~3등급	3,195	3,358	3,529	3,709	3,898	—
	건국훈장4등급	2,662	2,798	2,941	3,091	3,249	—
	건국훈장5등급	2,162	2,272	2,388	2,510	2,638	—
	건국포장	1,543	1,622	1,705	1,792	1,883	—
	대통령표창	1,030	1,083	1,138	1,196	1,257	—
추가 재정소요 (백만원, a×b×1 2)	건국훈장1~3등급	7,898	8,301	8,724	9,169	9,636	43,728
	건국훈장4등급	14,982	15,747	16,552	17,396	18,285	82,962
	건국훈장5등급	27,708	29,118	30,605	32,168	33,809	153,408
	건국포장	3,592	3,776	3,969	4,172	4,384	19,893
	대통령표창	8,504	8,941	9,395	9,874	10,378	47,092
	합계	62,684	65,883	69,245	72,779	76,492	347,08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생활지원금 지급 축소

- 생활지원금은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서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지급되고 있어, 생활지원금 수급자가 보상금 신규지급 대상이 될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은 중단되기 때문에, 보상금 신규지급 대상자 중 생활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미지급액을 추가재정소요 차감액으로 산정함
 - 생활지원금 월지급액은 최근 5년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월 478,000원, 기준중위소득 50%초과 70% 이하인 경우 월 345,000원으로 변화가 없어, 추계기간에도 생활지원금 월지급액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함
 - 보상금 신규지급 대상자 2,625명 중 생활지원금 수급자는 1,296명(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50명,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946명)임

[표 6] 생활지원금 지급 중단에 따른 재정소요 감소: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지급대상 (명, a)	중위 50% 이하	350	350	350	350	350	-
	중위 70% 이하	946	946	946	946	946	-
	합 계	1,296	1,296	1,296	1,296	1,296	-
월 지급단가 (천원, b)	중위 50% 이하	478	478	478	478	478	-
	중위 70% 이하	345	345	345	345	345	-
재정소요 감소 (백만원 a×b×12)	중위 50% 이하	2,008	2,008	2,008	2,008	2,008	10,040
	중위 70% 이하	3,916	3,916	3,916	3,916	3,916	19,580
	합 계	5,924	5,924	5,924	5,924	5,924	29,6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 손자녀간 보상금 수급권 이전 허용, 독립유공자의 사망일 구분에 따른 보상금 수급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는데 따른 재정소요 증가와 생활지원금 지급 중단에 따른 재정소요 감소를 고려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총 3,174억 6,300만원(연평균 634억 9,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보상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A)	62,684	65,883	69,245	72,779	76,492	347,083	69,417
생활지원금 지급 중단에 따른 재정소요 감소(B)	5,924	5,924	5,924	5,924	5,924	29,620	5,924
최종 추가재정소요(A-B)	56,760	59,959	63,321	66,855	70,568	317,463	63,4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 인원이 사망 시 다른 손자녀나 그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계기간 중 보상금 추가지급 대상인원 2,625명(2025년 8월 기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